

2023년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2023. 7.



[감 사 관]

2023년도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4.28. ~ 5.4.(5일간)
- 감사범위: 2019. 12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반: 감사단장 외 6명
- 감사중점
 - 출하자·도매법인·경매사·중도매인 등의 불공정 농산물 거래행위
 - 농산물 안전성 및 출하자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 재정·예산의 운영 및 집행 확인·점검
 - 시장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등 징수 실태
 - 시설물 관리 및 시민불편 사항 등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	계	추징	추급	계	징계	훈계	
14	6	5	1	2	4,096	4,096	-	-	-	-	1

○ 처분요구 내역

(단위: 건, 천원, 건/명)

연번	분야	지적 사항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	민원	공유재산(◇◇◇◇)사용 허가 및 취소처리 부적정	관리팀	시정	-	-	기관 경고	

연번	분야	지적 사항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2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및 ○○○ 용도변경 절차 이행 소홀	○팀	시정	-	-	-	
3	보안	보안업무 관리 소홀	○팀	주의	-	-	-	
4	공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업무처리 소홀	○팀	주의	-	-	-	
5	계약	공사 및 물품 하자만료검사 실시 지연	○팀	주의	-	-	-	
6	계약	지연배상금 징수 소홀	○팀	시정	추징 661	-	-	
7	회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팀	시정 통보	-	-	-	
8	농산물유통	시장사용료 가산금 징수 소홀	○팀	시정	추징 3,435	-	-	
9	농산물유통	도매시장법안(공판장) 평가결과 공고 미이행	◆팀	통보 (시정 완료)	-	-	-	
10	농산물유통	경매사 운영 관리 소홀	◆팀	주의	-	-	-	
11	공원녹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조경시설 관리 소홀	○팀	주의 권고	-	-	-	
12	통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소홀	○팀	시정	-	-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천광역시 기관 경고,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사용 허가 및 취소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에 따르면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1)와 같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법 제22조(사용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2)의 어느 하나에

-
- 1)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등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허가)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 등을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허가조건)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허가조건³⁾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인천광역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조건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허가조건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⁵⁾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개인사정)요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추진한 바 있다.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별지 제10호서식, 개정'22.4.21]

4)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별지 제10호서식, 개정'22.4.21. 2개월 전 → 1개월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는 허가조건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에 따라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용자 사용허가 취소 의사와 사유를 2개월 전 서면(수차례 취소의사를 밝혔으며 구두신고로 인정)으로 허가취소 사전요청을 받지 않고 허가취소 신청서 요청일 기준으로 허가취소 하였으며, 허가 취소일 이후부터 사용료 환급계산하고 별도의 원상복구기간(사용기간 미 포함하고 사용료의 미공제)을 부여한 후 허가 취소와 사용료를 반환처리 하였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는 도매시장내 ◇◇◇◇에 대하여 20**.**.*.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재 추진하였고, 개정(2022.4.2.)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허가조건에 따르면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된 조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조건에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으로 약정하고 사용허가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사용허가 취소(개인사정)를 요청하였으며 사용허가사전 취소 요청이 2개월 전에 하도록한 허가조건을 기준으로 요청일로부터 2개월(60일 약 00천원)을 합산한 기간⁶⁾을 허가취소예정일(원상복구기간 포함)로 결정하고 허가 취소통보하고 허가취소예정일 다음날부터 사용료의 반환처리 등을 처리하였다.

한편 20**.**.*.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면 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인천광역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

6) 2개월도 사용기간으로 보고 사용료 반환처리 여부 자문을 통해 확인후 반환공제 처리

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에 따르면 사용자는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나 2개월에 대해 사용기간으로 포함하여 사용료는 반환한다라고 관련근거나 자료등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언급되었거나 부과여부에 대한 사전안내 되는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해 2개월도 사용기간으로 포함하여 사용부과한다는 내용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허가조건에 포함하는 등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관리사무소”의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에 따라 2개월 사용료 징수의 타당성과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미 준수시 불이익 또는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2개월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료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문변호사(0명) 자문결과 만장일치로 사용료 부과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와 일부 사용허가 및 징수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무효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과시기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대부분이 2개월의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 할 수 있고 일부 취소원 제출 후 2개월이 지나야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사용료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관리사무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허가조건(개정 2022.4.21) 제1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월~'2*.*월 기간중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하면서 총 25건에 대하여 허가조건에 2개월 이전으로 약정하고 사용허가를 처리하였다.

이처럼 “관리사무소”에서는 동일 공유재산 허가건에 대하여 두차례 사용허가 처리와 취소 업무 처리함에 있어 관련기준 일부 미 준수와 담당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의 일관성 없이 부적정하게 업무처리함으로서 행정불신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기관경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취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하여 업무처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바랍니다.

[시정] 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자는 허가취소요청 기간을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유재산사용허가 및 취소 업무처리에 있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도시·군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및 ○○○ 용도변경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 이라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1항 제3호의 유통·공급 시설(시장)로 최초 19**.*.*. 도시·군 관리계획⁷⁾결정 고시하고 19**.*.**. 실시계획 인가 지형도면 고시 후 20**.*.*. 부터 시장이 개장되어 운영 중에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주민열람 공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7)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각목의 계획<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주)□□농산, (주)○○농산, ◇◇농협(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로부터 20**년, 20**년 각각 ▲▲동 □□□ 서측부 ◎◎◎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해 토지사용 승락을 득하고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관리사무소는 20**. *. **. 「◇◇◇ ◇◇◇◇◇ ◇ ◇◇◇ ◇◇ ◇◇◇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설건축물을 성수기는 임시□□□ (▽▽시설)으로 평상시에는 ◎◎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이용 변경 시에는 우선, 실시계획인가(변경) 절차 및 관련 법령, 기존 인가 내용, 의제사항 등 관계 법령 및 절차 등을 숙지하고, ◎◎◎ 면적 축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신청하여 인가 고시를 득해야 한다.

그리고 인가 고시 후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등) 및 같은 법 제12조1항(부설주차장 용도변경)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을 ●●구청에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부터 ▲▲동 임시□□□ 서측 가설 건축물 신고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20**년도 부터 20**년 까지 처리하면서 주차장을 점유한 ▲▲동 임시□□□ 면적 *,***m², 주차대수 ***대를 제외하는 실시계획 인가(변경)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 *. **, ○○○ ○○ ○ ○○○ ○○○○ 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 시에도 위 사항이 누락 된 채로 20**, *. *. 인가 고시가 되었고, 임시 □□□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지금까지 ◎◎ 및 임시□□□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시정] 삼산도매시장 시설 ◆◆◆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과 연계하여 토지 이용계획 재 수립, 기존 가설 건축물 환경 정비, 도시·군계획시설 인허가 작성 과업을 추가하고 원가내역서에 대가를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주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보안업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보안업무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도난·유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르면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비밀 보관용 이중 캐비닛에 비밀이 아닌 물품을 비밀과 함께 보관하고 있고, 파기하지 않은 비밀열람기록전을 미리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사본을 파기 후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보존기간이 5년이 경과한 비밀열람기록전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보안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비밀보관용 이중 캐비닛에 비밀만을 보관하여 보관기준을 준수하시고, 비밀사본을 파기 후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기재사항 기재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기 바라며,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비밀열람기록전을 파기하는 등 보안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면서 최초년도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사용개시일 전으로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 전에 미리 수납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00건에 대하여 최초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시 기한일이 경과한 날로 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료가 납부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관계법령에 위배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사 및 물품 하자만료검사 실시 지연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13장 제10절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 검사”라 한다)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 □□□조명 교체공사 등 *건의 공사 등에 대해 하자만료검사를 하자보수만료일이 경과한 후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하자만료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 보수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연배상금 징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월 이후) 중 ‘◇◇◇◇◇◇ ◇◇◇◇시설 교체공사’계약을 추진 하였다.

2.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연 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1. 9.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80호, 2021. 9. 30. 타법개정)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에 따르면 지체일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준공기한 이후에 제9절 “1”(검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다.

3. 관계사실

‘◇◇◇◇◇ ◇◇◇시설 교체공사’는 준공예정일이 20**.*.*.**, 계약 상대자인 (주)□□에서는 20**.*.*.에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준공검사(시운전) 중 20**.*.*. 이송 ◇◇◇◇ 등의 수정·보완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고, 계약상대자는 20**.*.*. 해당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준공검사는 20**.*.*. 실시되었다.

따라서 ‘◇◇◇◇◇ ◇◇◇시설 교체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는 시정조치일(20**.*.*.)부터 준공검사일(20**.*.*.)까지의 기간인 **일을 지체일수로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20**.*.*. ~ 20**.*.*.까지 *일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함으로써 000원을 과소 징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시정] 과소 징수한 지연배상금 000원을 징수하시기 바라며,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산정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통보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개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2.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따르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등의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제2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과 잡종금등 기타로 관리하여야 하고,

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지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하며, 제4항에 따르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등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귀속 대상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사항과 귀속 예정일, 반환절차 등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출납원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해당 출납원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6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며,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3. 관계사실

가. 지하 사무실(▲▲동 **호) 사용허가 관련 보증금

지하 사무실(▲▲동 **호) 사용허가 관련 보증금은 해당 지하 사무실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입찰 시 (주)□□가 20**. *. *. 관리사무소의 보통예금계좌에 납입한 입찰보증금(*,***,***원)으로, (주)□□가 낙찰 이후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특수계약조건인 공공요금 보증금(*,***,***원)을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구두)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통예금계좌에 계속 보관하던 중 20**. *. *.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한 사항이다.

그러나, (주)□□가 20**. *. *. 관리사무소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였을 때, 출납원은 해당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납입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았고,

낙찰 이후 사용허가 관련 보증금 납부대상자인 (주)□□가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사용허가 관련 보증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해당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찰보증금으로 납입 처리되어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여 사용허가 관련 보증금으로의 납입처리를 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않았다.

나. 지하△△ *호 관련 보증금

지하창고 5호와 관련한 보증금은 감사기간 중 제출한 ‘보증금(이행보험증권) 수급부’의 내용 상으로 20**.*.**. ~ 20**.*.*. 지하△△ *호에 대한 철거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납부자와 관련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비고’에 ‘연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보증금은 20**.*.**. 이전에 납부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해당 보증금(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의 납입사항 등 관련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감사일 현재 확인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상으로는 감사대상기간(20**.*.**월 이후) 중 매년 내역을 알 수 없는 전년도 이월액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제출된 자료에 따른 보관일과 완료(예정)일도 해당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날짜와 기간에 불과할 뿐, 해당기간에 지하△△ *호를 사용허가 받은 자가 납부한 금액은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는 매년 이월 처리를 하기 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및 반환기간 경과에 따른 귀속 조치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시정]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0건의 보증금에 대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역을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지하△△ *호 관련 보증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이력을
확인하시어 관련 규정에 따라 귀속 등 적정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시장사용료 가산금 징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매시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도록 하였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제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에 대한 부과 시설기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에 의한 도매시장 필수 시설, 부수시설로 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20조(시장사용료 징수 등) 제1항에 따르면 시장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하고,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백분의 3으로 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백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4항에 따르면 독촉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하였다.

2. 관계사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 대하여 부류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월별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 **월 이후) 중 체납이 발생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20**. *월(20**. *월 실적분) 부과 건 체납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건의 독촉장(문서)를 발부하며 독촉장(문서) 상 가산금이 아닌 연체료(연 00% 기준)를 부과하여, 조례 제20조에 따른 가산금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독촉장(문서)에 따른 연 00%와도 다른 기준(부과금액 대비 최종 00%, 000원)을 가산함으로써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대비 최소 000원의 가산금을 과소 징수하였다.

또한 20**. **. *. 발부한 독촉장(문서) 상의 납부기한인 20**. **. **.까지 체납액(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독촉장(문서)만 다시 발부하였다.

20**. *월(20**. *월 실적분)과 20**. *월(20**. *월 실적분) 부과 건에 대한 체납 사항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한 독촉장(문서) 상에도 가산금이 아닌 연체료(연 00% 기준)를 부과하였으며, 연 00%와도 다른 기준(각 00%, 00%)에 해당하는 금액(각 000원, 000원)을 가산함으로써 조례 제20조에 따른 가산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대비 각 000원과 000원의 가산금을 과소 징수하였다.

더욱이 체납액 독촉장은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하여야 함에도, 10일을 경과한 날짜를 기한으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시장사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시정] 과소 징수한 시장사용료 가산금 000원을 징수하시기 바라며,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금 산정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통보(시정완료)

제 목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평가결과 공고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매시장법인등은 재무제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관리 보고서와 도매시장법인등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5조(평가의 실시 등)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관계사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월 이후) 중 0번(20**년 ~ 20**년 실적)의 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市 농축산과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市 농축산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행규칙 제65조제5항에 따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해당 도매시장법인등에게만 문서로 통보하였을 뿐, 공고 등을 통해 도매시장 이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통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결과(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평가결과 포함)를 20**.*.*.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앞으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평가결과 공고 등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경매사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16조(경매사의 수)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주)□□ 00명, (주)△△ 00명, ◇◇(공) 00명 등 총 00명의 경매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 유통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는 “경매사”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경매사의 임면)제2항에 따라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법 제75조(교육훈련 등)제2항 및 시행규칙 제50조(교육

훈련 등)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는 그 임용·임명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며, 경매사가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 생산자(출하자)로부터 위탁 받은 농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매매자로서 도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임명 및 면직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경매사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경매사 결격사유 중 농수산물 유통법 제2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사항 미조회 00건, 교육 미이수 00건, 교육 지연 이수 00건 등이 확인되어 경매사 운영 관리가 일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매사의 임면신고, 결격조회 및 교육훈련이수 등을 법인으로부터 보고 받아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도매시장 내 경매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권고

제 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조경시설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하 ‘삼산도매시장’이라 한다)(20**.*월 개장, 부평구 삼산동)은 개장 당시 기준으로 대지면적 000m² 중 녹지(000m²) 공간에 상록 교목(소나무 등 00종) 000주, 낙엽교목(느티나무 등 00종) 000주, 관목(눈주목 등 0종) 000주, 지피류(맥문동 등 00종) 000m²의 조경수목(초화) 식재 및 사각파고라 00개, 등이자 00개 등 조경시설물을 조성하여 삼산도매시장 관계자 및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 조경시설물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따라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의 규정에 적합하고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경 설계기준(KDS 3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7호, 2019. 7. 26.] 식생 유지관리(KDS 34 99 10 : 2019) 3.2.2.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에는 1) 수목 전정, 2) 제초, 3) 잔디깎기, 4) 잔디시비 5) 뗏밥주기, 6) 수목시비, 7) 병·충해방제, 8) 관수 및 배수, 9) 지주목 재결속, 10) 월동작업 등 조경수목(초화) 조성 후 연간 관리사항에 대하여 수종, 작업의 종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KDS 34 99 15 : 2019) 3.1.2. “조경시설관리”에는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 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하고,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 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라고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산도매시장 조경시설을 점검한 결과 녹지 내 물건 적치 및 경작, 수목고사, 조경시설 노후화 및 파손, 보식 수목(초화) 생육불량, 수목 병해충, 제초 작업 미실시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삼산도매시장 관계자 및 방문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 등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조경공사 예정금액 산정 소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삼산도매시장 시설을 정비·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20**년 삼산도매시장 내 조경수목 관리를 위하여 ○○○ ○○○ (○○○) 등의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나인 조경공사의 원가계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정한 건설공사표준품셈(이하 ‘표준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2조제9호에 따라서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공작물이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되는 수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지 내 조경이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건축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을 하는 것으로, 삼산도매시장 내 조성된 조경시설은 이에 해당 된다.

또한 표준품셈(2022년도) 4-5 조경공사 유지보수에는 조경수목의 전정에 대하여 1) 일반 공원 및 녹지대에 적용하는 ‘일반전정’ 및 ‘조형전정’, 2) 가로수에 적용하는 ‘가로수 전정’으로 공사에정금액 산출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삼산 도매시장 내 조경수목은 녹지대에 적용하는 일반전정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품셈 ‘1-1-1 목적’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며, ‘1-1-3 적용방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 되지 않도록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표준품셈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는 표준품셈(2022년도) ‘4-5-1 일반전정’을 우선 적용 후 농산물 유통을 위한 화물트럭, 방문자 차량 및 도매시장 작업기계 이동 등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4-3 품의 할증’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제2항제4호에 따른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배치의 안전관리 경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공사에정가격을 산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20**년 상·하반기 두 차례 ○○○○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일반전정품을 우선 적용하지 않고 가로수 전정품을 적용하여 공사에정가격 산정의 원가계산자료 적용에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주의] 도매시장 내 수목전정 등 조경시설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에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정한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내 조경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종합적 연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는 건물과 주차장, 건물 외곽 주위 청사관리, 시설 안전, 화재예방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차량 흐름 및 주차장 확인 등을 위하여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를 00대를 운영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ㄷ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 등에 따르면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 영상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45조(개인 영상 정보 관리 대장)에 따르면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 제3자에게 제공, 파기 또는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 영상 정보 관리 대장’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에서는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 영상 정보 파일의 보호·파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 관계사실

관리사무소는 시설 안전, 화재예방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을 위하여 주차장 및 △△동, ▽▽동, 정·후문, ○○○ ○○동 입·출구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00대에 대하여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안내판 미설치 및 장기간 방치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안내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로 유지관리담당자만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직원, 정·후문 ◇◇ 직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 정보를 접근하고 취급하는 등 접근 권한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장소 00개소를 점검한 결과 ◆◆ 사무실, ◎실, 정·후문, ○○○ ○○동에 설치된 영상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을 마련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관리 사무실 00대중 00대만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00대는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여야 하나 ◆◆ 사무실, ◎실, 정·후문, ○○○ ○○동에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는 20**년 *월 **일 운영관리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나, 20**년 *월, 20**년 *월 지하주차장 CCTV를 추가로 00대를 설치하여 ◆◆사무소는 00대에서 00대로, ◎실은 00대에서 00대로 변경된 내용과 ○○○ ○○동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관리 장소로 지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변경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관리지침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운영관리지침 상에는 영상 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에 보관기관을 촬영일로부터 00일로 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 ○○동은 보관이 안 되어 있었고, 나머지 관리 장소도 영상 정보를 00~00일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 영상정보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 장소에서는 관리 대장을 별도로 비치하여 작성을 하지 않았고, ◎실은 법정서식이 아닌 CCTV 열람 기록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시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표지가 미설치 되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안내판은 정비하기 바랍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 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접근권한자 이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접근하거나 취급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영상정보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주시고, 공개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중 관리장소, 설치대수,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은 수정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